**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

중국인대망(www.npc.gov.cn) 2016년 9월 3일

**제1장 총칙**

1.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환경을 향해 직접적으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보호세 납세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 법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및 소음을 지칭한다.
4.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오수집중처리장소 및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에게는 해당 오염물질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 고체폐기물을 저장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서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에게는 고체폐기물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농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으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환경보호세의 세목, 세액은 이 법에 첨부한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따라 집행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환경한계용량,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경제·사회·생태의 발전 목표와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규정된 세액 기준을 토대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적용 세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장 과세기준 및 과세액**

1.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과세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2.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은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환산한 오염당량값에 따라 확정한다.
3.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환산한 오염당량값에 따라 확정한다.
4. 과세대상 고체폐기물은 고체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다.
5. 과세대상 소음은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데시벨 수치에 따라 확정한다.
6.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오염당량값은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해당 오염물질의 오염당량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각 종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당량치는 이 법에 첨부한 <과세대상 오염물질 및 당량치표>에 따라 집행한다.
7. 각 배출구의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또는 배출구가 없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오염당량값의 크기 순서로 배열할 때 3위 안에 드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각 배출구의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로 구분하여 오염당량값의 크기 순서로 배열할 때 5위 안에 드는 중금속 오염물질과 3위 안에 드는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대한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동일 배출구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전국인미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비안(備案)한다.

1.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고체폐기물의 배출량과 소음의 데시벨 수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2. 납세자가 국가의 규정과 감측 규범에 부합되는 오염물질 자동 감측기기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오염물질 자동 감측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3. 납세자가 오염물질 자동 감측기기를 설치 및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측기구가 발행한 국가의 관련 규정 및 감측 규범에 부합되는 감측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4.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다양한 등 원인으로 인해 감측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규정한 오염배출계수, 물질수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5. 본 조 제(1)호 ~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규정한 추출 측정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6. 환경보호세의 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7.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의 과세액은 오염당량값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8.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과세액은 오염당량값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9. 과세대상 고체폐기물의 과세액은 고체폐기물 배출량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10. 과세대상 소음의 과세액은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데시벨 수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적용 세액으로 한다.

**제3장 세금감면 혜택**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면제한다.
2. 농업생산(규모화 양식(養殖) 제외)에서 배출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
3. 자동차, 기관차, 비도로 이동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이동 오염원이 배출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
4.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농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가 환경으로 배출하는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오염물질;
5.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고체폐기물;
6. 국무원이 세금 면제를 승인한 기타의 경우.

전 항 제(5)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1.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50% 감면한다.

**제4장 징수관리**

1. 환경보호세는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과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관리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이 법과 환경보호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한 감측관리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세무기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기관의 업무분장 및 협력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환경보호세 징수관리를 강화하며 세금이 적시 전액 국고로 불입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환경보호주관부서와 세무기관은 조세 정보 공유 플랫폼과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배출허가,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 환경법 위반기록 및 행정처벌 기록 등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세무기간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세금 국고 불입, 감면세액, 체납세액 및 리스크 사항 등 환경보호세와 연관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일에 발생한다.
2. 납세자는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지의 세무기관에 환경보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환경보호세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한다. 고정 기한에 따른 계산 및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회(次)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4. 납세자는 납세기한 만기일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와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달받은 관련 데이터·자료를 비교·대조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에 이상이 있다거나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 기피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세무기관으로부터 데이터·자료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재검토를 거친 데이터·자료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환경보호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오염물질 배출 종류, 배출량 및 과세액을 결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으로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또는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해양 공정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환경보호세 신고·납부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 해양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3. 납세자와 세무기관,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그 업무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1.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 오염당량이라 함은,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배출 활동의 환경 유해성과 처리기술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각 오염물질의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종합지표 또는 계량단위를 지칭한다. 동일 매개물 동일 오염당량의 각 오염물질은 그 오염성이 기본적으로 상당하다.
3. 오염배출계수라 함은, 정상적인 기술·경제 및 관리 조건하에서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량의 평균통계치를 지칭한다.
4. 물질수지라 함은 물질 질량보존의 법칙에 근거하여 생산 과정에 사용된 원료, 생산된 제품과 발생한 폐기물 등을 측산하는 일종의 방법을 지칭하며 원료 소모량은 제품의 량과 물질 손실량의 합계이다.
5. 각 급 인민정부는 납세자가 환경보호 건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도록 격려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오염물질 자동 감측기기 투자에 대하여 자금 및 정책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며 오염배출비의 징수를 중단한다.
7. 이 법은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

|  |  |  |
| --- | --- | --- |
| 세목 | 과세단위 | 세액 |
| 대기오염물질 | 오염당량당 | 1.2위안 |
| 수질오염물질 | 오염당량당 | 1.4위안 |
| 고체폐기물 |

|  |  |  |
| --- | --- | --- |
| 매간석 | 톤당 | 5위안 |
| 미광(尾鑛) | 톤당 | 15위안 |
| 위험폐기물 | 톤당 | 1000위안 |
| 제련 잔여물, 분말연탄재, 광재, 기타 고체폐기물 (반고체·액체 폐기물 포함) | 톤당 | 25위안 |

 |   |
| 소음 | 공업 소음 |

|  |  |
| --- | --- |
| 기준치 1—3데시벨 초과 | 350위안/월 |
| 기준치 4—6데시벨 초과 | 700위안/월 |
| 기준치 7—9데시벨 초과 | 1,400위안/월 |
| 기준치 10—12데시벨 초과 | 2,800위안/월 |
| 기준치 13—15데시벨 초과 | 5,600위안/월 |
| 기준치 16데시벨 초과 | 11,200위안/월 |

 |

소음 과세에 대한 설명 :

1. 한 업체의 경계선에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되는 위치가 두개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위치의 기준 초과 소음 레벨에 근거하여 과세액을 계산하며,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계선에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되는 위치가 두개 이상인 경우 두개 업체로 간주하여 과세액을 계산한다.
2. 한 업체에 두개 이상의 작업현장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합병징수한다.
3. 주(晝)·야(夜) 모두 환경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晝)·야(夜) 각각 별도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누계징수한다.
4. 1개월 내에 기준 초과 일수가 15일 미만인 소음원의 경우 반감하여 과세액을 계산한다.
5. 공장 경계선의 기준 초과 소음이 야간에 빈번히 돌발하거나 야간에 간혹적으로 돌발하는 경우 등가소음레벨 및 최고소음 두 지표 중 데시벨 수치가 높은 지표를 택하여 과세액을 계산한다.

별표 2 :

**과세대상 오염물질 및 당량치표**

* 1. 제1류 수질오염물질 오염당량치

|  |  |
| --- | --- |
| 오염물질 | 오염당량치(kg) |
| 1. 총수은 | 0.0005 |
| 2. 총카드뮴 | 0.005 |
| 3. 총크롬 | 0.04 |
| 4. 6가크롬 | 0.02 |
| 5. 총비소 | 0.02 |
| 6. 총납 | 0.025 |
| 7. 총니켈 | 0.025 |
| 8. 벤조피렌 | 0.0000003 |
| 9. 총베릴륨 | 0.01 |
| 10. 총은 | 0.02 |

* 1. 제2류 수질오염물질 오염당량치

|  |  |
| --- | --- |
| 오염물질 | 오염당량치(kg) |
| 11. 부유물질(SS) | 4 |
| 12. 생물적 산소 요구량(BOD5) | 0.5 |
| 13.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cr) | 1 |
| 14. 총유기탄소(TOC) | 0.49 |
| 15. 석유류 | 0.1 |
| 16. 동·식물유 | 0.16 |
| 17. 휘발성 페놀 | 0.08 |
| 18. 총사이안화물 | 0.05 |
| 19. 황화물 | 0.125 |
| 20. 암모니아 질소 | 0.8 |
| 21. 불화물 | 0.5 |
| 22. 포름알데히드 | 0.125 |
| 23. 아닐린류 | 0.2 |
| 24. 니트로벤젠류 | 0.2 |
| 25. 음이온 계면활성제(LAS) | 0.2 |
| 26. 총구리 | 0.1 |
| 27. 총아연 | 0.2 |
| 28. 총망간 | 0.2 |
| 29. 채색 현상제(CD－2) | 0.2 |
| 30. 총인 | 0.25 |
| 31. 단원소 인 (P로 표시) | 0.05 |
| 32. 유기인계 농약(P로 표시) | 0.05 |
| 33. 로고(rogor) | 0.05 |
| 34. 메틸파라티온 | 0.05 |
| 35. 말라티온 | 0.05 |
| 36. 파라티온 | 0.05 |
| 37. 펜타클로로페널 및 펜타클로로페놀산 나트륨(펜타클로로페널로 표시) | 0.25 |
| 38. 클로로포름 | 0.04 |
| 39. 흡착가능 유기할로겐화물(AOX)(Cl로 표시) | 0.25 |
| 40. 사염화탄소 | 0.04 |
| 41.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0.04 |
| 4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4 |
| 43. 벤젠 | 0.02 |
| 44. 톨루엔 | 0.02 |
| 45. 에틸벤젠 | 0.02 |
| 46. 오르토자일렌 | 0.02 |
| 47. 파라자일렌 | 0.02 |
| 48. 메타자일렌 | 0.02 |
| 49. 클로로벤젠 | 0.02 |
| 50. 오르토디클로로벤젠 | 0.02 |
| 51. 패러디클로로벤젠 | 0.02 |
| 52. p-니트로클로로벤젠 | 0.02 |
| 53.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 0.02 |
| 54. 페놀 | 0.02 |
| 55. 메타크레졸 | 0.02 |
| 56. 2,4-다이클로로페놀 | 0.02 |
| 57. 2,4,6-트리클로로페놀 | 0.02 |
| 58. 프탈산디부틸 | 0.02 |
| 59. 프탈산다이옥틸 | 0.02 |
| 60. 아크릴로니트릴 | 0.125 |
| 61. 총셀레늄 | 0.02 |

설명 :

1. 제1류, 제2류 오염물질은 <오수 종합 배출기준>( GB 8978—1996)에 근거하여 분류하였음.
2. 동일 배출구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CORcr), 생물적 산소 요구량(BOD5) 및 총유기탄소(TOC)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함.
	1. PH치, 색도, 대장균군수, 잔류염소량의 수질오염물질 오염당량치

|  |  |
| --- | --- |
| 오염물질 | 오염당량치 |
| 1. PH치 | 1. 0-1, 13-142. 1-2, 12-133. 2-3, 11-124. 3-4, 10-115. 4-5, 9-106. 5-6 | 0.06톤 오수0.125톤 오수0.25톤 오수0.5톤 오수1톤 오수5톤 오수 |
| 2. 색도 | 5톤 수·배 |   |
| 3. 대장균군수(기준 초과) | 3.3톤 오수 |   |
| 4. 잔류염소량(염소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병원의 폐수) | 3.3톤 오수 |   |

설명 :

1. 대장균군수와 잔류염소량은 둘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PH5-6은 5 이상, 6 미만을 의미하고; PH9-10은 9 이상, 10 미만을 의미하며 나머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추한다.
	1. 가축·가금업, 소형기업 및 3차산업의 수질오염물질 오염당량치

|  |  |
| --- | --- |
| 유형 | 오염당량치 |
| 가축·가금 사육장 |

|  |  |
| --- | --- |
| 1. 소 | 0.1마리 |
| 2. 돼지 | 1마리 |
| 3. 닭·오리 등 가금 | 30마리 |

 |
| 4. 소형기업 | 1.8톤 오수 |
| 5. 요식·오락·서비스업 | 0.5톤 오수 |
| 6. 병원 |

|  |  |  |  |
| --- | --- | --- | --- |
| 소독 |

|  |
| --- |
| 0.14침대 |
| 2.8톤 오수 |

 |
| 비소독 |

|  |
| --- |
| 0.07침대 |
| 1.4톤 오수 |

 |

 |

설명 :

1. 이 표는 실제 감측이 불가능하거나 물질수지의 방식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가축·가금업, 소형기업 및 3차산업 등 소형 오염배출업체의 수질오염물질 오염당량값에만 적용된다.
2. 사육두수가 소 5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등 5,000마리를 초과하는 가축·가금 사육장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 병원의 침대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표에 따라 오염당량을 계산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당량치

|  |  |
| --- | --- |
| 오염물질 | 오염당량치(kg) |
| 1. 이산화유황 | 0.95 |
| 2. 질소산화물 | 0.95 |
| 3. 일산화탄소 | 16.7 |
| 4. 염소가스 | 0.34 |
| 5. 염화수소 | 10.75 |
| 6. 불화물 | 0.87 |
| 7. 시안화수소 | 0.005 |
| 8. 황산 미스트 | 0.6 |
| 9. 크롬산 미스트 | 0.0007 |
| 10. 수은 및 수은 화합물 | 0.0001 |
| 11. 일반 분진 | 4 |
| 12. 석면 분진 | 0.53 |
| 13. 유리솜 분진 | 2.13 |
| 14. 카본블랙 분진 | 0.59 |
| 15. 납 및 납 화합물 | 0.02 |
| 16.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 0.03 |
| 17. 베릴륨 및 베릴륨 화합물 | 0.0004 |
| 18. 니켈 및 니켈 화합물 | 0.13 |
| 19. 주석 및 주석 화합물 | 0.27 |
| 20. 검댕 | 2.18 |
| 21. 벤젠 | 0.05 |
| 22. 톨루엔 | 0.18 |
| 23. 자일랜 | 0.27 |
| 24. 벤조아필렌 | 0.000002 |
| 25. 포름알데히드 | 0.09 |
| 26. 아세트알데히드 | 0.45 |
| 27. 아크릴알데히드 | 0.06 |
| 28. 메탄올 | 0.67 |
| 29. 페놀류 | 0.35 |
| 30. 아스팔트 증기 | 0.19 |
| 31. 아닐린류 | 0.21 |
| 32. 클로로벤젠류 | 0.72 |
| 33. 니트로벤젠 | 0.17 |
| 34. 아크릴로니트릴 | 0.22 |
| 35. 클로로에틸렌 | 0.55 |
| 36. 포스겐 | 0.04 |
| 37. 황화수소 | 0.29 |
| 38. 암모니아 | 9.09 |
| 39. 트라이메틸아민 | 0.32 |
| 40. 메틸메르캅탄 | 0.04 |
| 41. 디메틸설파이드 | 0.28 |
| 42. 디메틸디설파이드 | 0.28 |
| 43. 스티렌 | 25 |
| 44. 이황화탄소 | 20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에 관한 설명**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환경보호 및 관련 입법 업무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생태환경 보호는 지금 세대에 공을 들이면 천추만대가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써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생태환경 보호를 보다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수차례 피력한 바 있으며, 리커챵(李克强) 총리 또한 환경보호세는 ‘세금으로 비용 대체’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기에 환경보호세 입법 관련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지시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 4중전회는 ‘환경보호세로 환경보호비 대체’, ‘엄격한 법률제도를 통한 생태환경 보호’를 제시하였다.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 및 실행하기 위하여 재정부, 세무총국, 환경보호부는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심의안)>을 작성하였다.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차례에 걸쳐 서면 방식으로 관련 부서, 각 성급 인민정부, 업계조직, 기업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대중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입법의 핵심 문제를 연구 및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및자원보호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와 수차례의 좌담회를 열어 면전에서 지도의견을 청취하였다. 각 방면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연구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이하 ‘초안’으로 약칭)을 탄생시켰다. 초안은 국무원 제13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입법의 총체적 출발점**
2. ‘조세부담의 수평적 이전(稅負平移)’ 원칙에 따라 환경보호비를 환경보호세로 전환하였다. 현행 환경보호법은 1979년에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시범시행)>에 의해 확립된 오염배출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2003년 국뭔이 공표한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제도>는 오염배출비의 징수·사용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누계하여 2,115.99억위안의 오염배출비를 징수하였으며, 누계하여 500여만개의 기업체·사업체와 자영업자가 오염배출비를 납부하였다. 2015년에는 28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173억위안의 오염배출비를 징수하였다. 오염배출비 제도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퇴치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 왔으나 조세 제도와 비교할 때 법 집행의 강성이 부족하고 지방 정부와 부서가 간섭하는 등 단점이 있어 환경보호비를 환경보호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오염배출비 제도의 환경보호세 제도로의 안정적 이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안은 현행 오염배출비 부과 항목에 근거하여 세목을 설치하였고 오염배출비 부과대상을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과세액 계산 근거로 하였고 현행 오염배출비 부과 기준을 환경보호세의 세액 하한으로 하였다.
3. 중점 이슈를 해결하는데 치중하였다. 첫번째는, 각 지의 현황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이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규정된 세액 기준을 토대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적용 세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두번째는, 각 방면의 논쟁이 비교적 치열한 이산화탄소의 경우 잠정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였다. 환경보호비를 환경보호세로 전환함에 따라 징수부서를 환경보호부에서 세무부서로 변경하였고 환경보호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초안은 징수관리 업무 협력 매커니즘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5. **초안의 주요내용**
6. 납세자. 환경보호법과 연결시켜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환경을 향해 직접적으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를 환경보호세 납세자로 한다(제2조).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오수집중처리장소 및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경우 환경을 향해 직접적으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관계로 해당 오염물질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 고체폐기물을 저장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서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경우 고체폐기물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4조).
7.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 현행 오염배출비 제도의 부과대상과 연결시켜 초안은 환경보호세의 과세대상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및 소음 등 네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고(제3조); 구체적인 세목·세액은 환경보호세법에 첨부한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제6조 제1항).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며 더 이상 오염배출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26조).

현행 오염배출비 제도의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배출비 부과범위와 연결시켜 초안은 각 배출구의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또는 배출구가 없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오염당량값의 크기 순서로 배열할 때 3위 안에 드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각 배출구의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로 구분하여 오염당량값의 크기 순서로 배열할 때 5위 안에 드는 중금속 오염물질과 3위 안에 드는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아울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대한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동일 배출구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전국인미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비안(備案)한다(제9조). 각 종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당량치는 이 법에 첨부한 <과세대상 오염물질 및 당량치표>에 따라 집행한다(제8조).

1. 조세부담. 발전개혁위·재정부·환경보호부가 2014년 9월에 공표한 <오염배출비 징수기준 조정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는 2015년 6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의 오염배출비 기준을 2003년의 기준에서 1배 상향조정하여 오염당량당 1.2위안 및 1.4위안보다 낮지 않게 각각 조정하였다. 그 중에서, 7개 성·직할시가 오염배출비 부과기준을 통지에 규정한 최저 기준보다 높게 조정하였다. 베이징(北京)은 최저 기준의 8~9배로 조정하였고; 톈진(天津)은 최저 기준의 5~7배로 조정하였으며; 상하이(上海)는 세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기준의 3~6.5배로 조정하였고; 쟝수(江蘇)는 두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기준의 3~4배로 조정하였으며; 허베이(河北)는 세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기준의 2~5배로 조정하였고; 산둥(山東)은 두단계로 구분하여 대기오염물질 오염배출비 기준을 최저 기준의 2.5~5배로 조정하였으며; 후베이(湖北)는 두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기준의 1~2배로 조정하였다.

초안은 현행 오염배출비 부과 기준을 환경보호세 세액의 하한으로 규정하였다 : 대기오염물질의 세액은 오염당량당 1.2위안, 수질오염물질의 세액은 오염당량당 1.4위안, 고체폐기물의 세액은 그 유형별로 톤당 5위안~1,000위안, 소음의 세액은 기준을 초과한 데시벨 수치별로 월당 350위안~11,200위안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단계 일부 성·직할시가 오염배출비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일부 성·직할시의 오염배출비 부과 기준이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환경한계용량,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경제·사회·생태의 발전 목표와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규정된 세액 기준을 토대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적용 세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6조).

1. 세금감면 혜택. 초안은 다섯가지 경우에 환경보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 첫번째,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에서 배출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환경보호세를 면제하되 농촌 환경에 대한 위협이 비교적 큰 편인 규모화 양식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두번째, 현행 조세 제도 중 차량선박세·소비세·차량구매세 등 세금 종목을 통해 자동차의 생산과 사용을 조율하고 있고 그 중에서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차량선박세와 소비세가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소를 촉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에 따라 현단계 구조적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큰 배경 속에서 사용원가를 진일보 증가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고려되어 자동차, 기관차, 비도로 이동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이동 오염원이 배출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환경보호세를 면제하였다. 세번째, 허용기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농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의 오염배출비를 면제한다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농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가 환경으로 배출하는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환경보호세를 면제하였으며 공업오수집중처리장소의 경우 세금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네번째, 고체폐기물에 대한 종합적 활용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격려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고체폐기물의 환경보호세를 면제하였다. 다섯번째는 국무원이 세금 면제를 승인한 기타의 경우이다.(제12조 제1항)

기업의 선진기술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격려하기 위하여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50% 감면한다.(제13조)

1. 조세 징수관리.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제19조).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징수관리를 담당하고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감측관리를 담당한다(제14조). 환경보호주관부서와 세무기관은 조세 정보 공유 플랫폼과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관련 납세 정보와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제15조).

그 외에도 초안은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과세근거와 확정 방법(제7조),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계산방법과 순서(제10조), 과세액의 계산방법(제11조)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환경보호세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환경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 행정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